

2021년 12월 1일

각위

아사히 카세이 주식회사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세퍼레이터 중국 특허에 관한
중국인민공화국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의 특허유지판결에 대하여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세퍼레이터에 관한 특허권 침해소송~

아사히 카세이 주식회사(본사: 도쿄토 치요다쿠, 사장: 코보리 히데키, 이하 “당사”)가 보유하는 중국 특허(특허 제 ZL200680046997.8 호, 이하 “본건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사건에서, 중국인민공화국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2021년 9월 28일에 본건 특허를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사는 2018년 8월에 중국 선전시의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세퍼레이터의 판매회사인 선전시 쉬란(旭冉)전자 유한공사 및 선전시 쉬란(旭然)전자 유한공사(이하, 쉬란전자 등**)를 공동 피고로 하여, 당사가 보유한 본건 특허에 근거하여 쉬란전자 등이 판매하는 『단층 W-scope』 전지용 세퍼레이터 제품에 대한 중국에서의 판매 금지와 손해 배상(합계 인민위안 100 만위안)을 요구하며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건 특허의 권리 침해에 관한 당사 주장이 전면적으로 인정되어,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상기 제품의 판매 금지 및 손해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중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0년 12월).

본 심판 사건은 선전시 쉬란(旭冉)전자 유한공사가 당사 제소 후에 본건 특허의 무효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본건 특허를 유지하는 심결을 선고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중국인민공화국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제소하였는데, 이번에 위와 같이 특허를 유지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지적 재산을 중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상기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심리 대상인 청구항 전부를 유지하는 판결

**더블유·스코프 주식회사(본사: 도쿄토 시나가와쿠)의 중국에서의 판매 대리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사건에서 심리 대상인 청구항

전부를 유지하는 심결

【과거의 관련 프레스릴리스·알림】

【중국에서의 침해소송】

「선전시 쉬란전자 유한공사 등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제기에 관하여」(2018년 8월 20일)
<https://www.asahi-kasei.com/news/2018/e180820.html>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세퍼레이터 중국 특허에 관한 중국국가지식산업국의 특허 유지 심결에 대하여」(2019년 7월 29일)」

https://www.asahi-kasei.com/news/2019/pdf/e1190729_1.pdf

「선전시 쉬란전자 등에 대한 중국 특허권 침해 소송의 판결에 관하여」(2020년 5월 11일)

https://www.asahi-kasei.com/jp/news/2020/ip4ep30000000x69-att/e1200511_1.pdf

「선전시 쉬란전자 등에 대한 중국 특허권 침해 소송의 종심 판결에 대하여」(2021年 1月 29日)

https://www.asahi-kasei.com/jp/news/2020/ip4ep3000000026m0-att/e1210129_1.pdf

【한국에서의 침해소송】

「더블유스코프 주식회사 등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제기에 관하여」(2020년 2월 4일)
https://www.asahi-kasei.com/news/2019/pdf/e1200204_1.pdf

「더블유스코프 주식회사 등에 대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 관한 당사 한국 특허의 유지 심결에 대하여」(2020년 12월 23일)

https://www.asahi-kasei.com/jp/news/2020/ip4ep300000001yem-att/e1201223_1.pdf

【참고】

당사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세퍼레이터(하이포아™)에 관한 지적재산 폴리시에 대하여
https://www.asahi-kasei.co.jp/hipore/intellectual_property_policy_kr.html

이상